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의 발달로 경비현장에서 지능형 CCTV, 출입통제시스템 등 첨단 보안장비의 활용이 점점 증가하는 등 경비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이 이수하는 교육과정에 이를 반영해야 하고, 현행 규정상 경비원 명부에 재산, 가족·교우관계, 보증인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등 경비업 민원 서식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비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의 교육과목 등을 개선하고, 행정청이 처리 목적에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경비업 민원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행정안전부령 제 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법 제10조제2항제4호”를 “법 제10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밖에 정신교양”을 “직업윤리”로 한다.

①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은 매 월 2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밖에 정신교양”을 “직업윤리”로 한다.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은 매 월 3시간 이상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

13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3서식 및 별지 제15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경비지도사 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9조제1항관련)

구분 (교육시간)	과목		시간
공통교육 (24시간)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계 법령(감독명령, 유권해석, 판례를 포함한다)		4
	실무 I (경비원 지도·감독·교육 계획 수립·실시 및 기록 유지를 포함한다)		4
	실무 II (집단민원현장 등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 지도·감독·교육기법을 포함한다)		3
	장비사용법(CCTV 등 보안장비를 활용한 경비 요령을 포함한다)		2
	범죄·테러·재난 대응 요령 및 화재대처법		2
	응급처치법		2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2
	체포·호신술		2
	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3
자격의 종류별 교육 (16시간)	일반경비 지도사	시설경비	3
		호송경비	2
		신변보호	2
		특수경비	2
		기계경비개론	2
		일반경비현장실습	5
	기계경비 지도사	기계경비운용관리	4
		기계경비기획및설계	4
		인력경비개론	3
		기계경비현장실습	5
계			40

비고: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공통교육은 면제한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교육시간)	과목	시간
이론교육 (4시간)	「경비업법」 등 관계 법령(감독명령, 유권해석, 판례를 포함한다)	2
	범죄예방론	2
실무교육 (19시간)	시설경비실무(신고 및 순찰·출입통제·질서유지·개인정보처리 요령과 관찰·기록기법을 포함한다)	4
	호송경비실무	2
	신변보호실무	2
	기계경비실무	2
	사고예방대책(테러·재난 대응 요령, 화재대처법 및 응급처치법을 포함한다)	3
	체포·호신술(질문·검색 및 상황 대응 요령을 포함한다)	2
	장비사용법(CCTV 등 보안장비를 활용한 경비 요령을 포함한다)	2
	직업윤리 및 서비스(예절 및 인권교육을 포함한다)	2
기타(1시간)	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1
계		24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15조제1항 관련)

구분 (교육시간)	과목	시간
이론교육 (15시간)	「경비업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계 법령(감독명령, 유권 해석, 판례를 포함한다)	8
	「헌법」 및 형사법(인권, 경비관련 범죄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4
	범죄예방론	3
실무교육 (61시간)	테러 및 재난 대응요령	4
	폭발물 처리요령	6
	화재대처법	3
	응급처치법	3
	장비사용법(CCTV 등 보안장비를 활용한 경비 요령을 포함한다)	3
	출입통제 요령	3
	직업윤리 및 서비스(예절 및 인권교육을 포함한다)	4
	기계경비 실무	3
	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6
	시설경비요령(신고 및 순찰·질서유지·야간경비 요령을 포함한다)	4
	민방공(화생방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4
	총기조작	3
	사격	8
	체포·호신술(질문·검색 및 상황 대응 요령을 포함한다)	4
	관찰·기록기법(개인정보 처리 요령을 포함한다)	3
기타(4시간)	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4
계		80

호송경비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통지인	법인 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통지 내용	출발지			
	종착지			
	중간기착지	도내(지명)	관할 경찰서	
		도외(지명)	관할 경찰서	
	도급자(회사명)			
	주요호송품명			
	경비업무의 기간	. 부터 . 까지 (일간)		
호송횟수	월	회		
경비원 명단	성명	직책	성명	직책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신규
경비업 [] 변경 허가신청서
[] 갱신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법인 명칭		허가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출장소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신청 내용	신청경비업무 [] 시설경비업무 [] 호송경비업무 [] 신변보호업무 [] 기계경비업무 [] 특수경비업무			
	자본			
	손해배상(공탁·보험·공제)			
「경비업법」 제4조제1항·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비업의 (신규·변경·갱신)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규·변경 허가신청 가. 법인의 정관 1부 나.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다.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각 1부(경비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갖추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갱신 허가신청 가. 허가증 원본 나. 정관 1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0,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경찰서·시·도경찰청) → 결재 (경찰서·시·도경찰청) → 허가증 교부 (신청인)				

제 호

허 가 증

1. 법 인 명 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성 명

4. 생 년 월 일

5. 허 가 경 비 업 무

6. 허 가 유효 기 간

경비업법 제4조제1항·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도경찰청장

직 인

연 월 일	변경신고사항	확 인 자

허가증 재교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법인 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비업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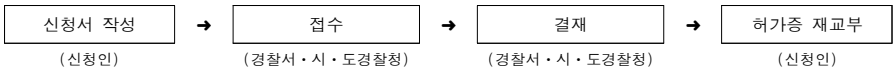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유서(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 허가증(허가증이 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000원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법인 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신고 내용	현재
	변경 후
	사유

「경비업법」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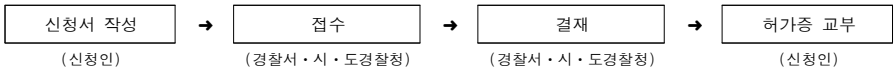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명칭 변경의 경우: 허가증 원본 2. 대표자 변경의 경우: 법인 대표자의 이력서 1부 및 허가증 원본 3. 임원 변경의 경우: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4. 주사무소 또는 출장소 변경의 경우: 허가증 원본 5. 정관의 목적 변경의 경우: 법인의 정관 1부	수수료 2,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 호

[] 신입교육 이수
[] 배치폐지 **확인증**

성명		생년월일	
----	--	------	--

1. 신입교육 이수 확인

위의 사람은 아래와 같이 [] 일반경비원 []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교육기관	교육일	교육이수증 교부번호

2. 배치폐지 확인

위의 사람에 대하여 경비원 최종 배치폐지일 및 현재 배치여부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 최종 배치폐지일: 년 월 일
○ 현재 배치여부: [] 배치 중(년 월 일부터)
[] 미배치

년 월 일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직 인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법인 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복장 사진	상의	하의

표지장 사진	
--------	--

「경비업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비원의 복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작성요령

여러 개의 복장을 신고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경비원 복장 등
[] 출동차량 도색 등
시정명령 이행보고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보고인	법인 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시정명령 이행보고	시정 지시사항			
	시정 결과			

「경비업법」 제16조제4항, 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장 등·출동차량 도색 등)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시정사항에 따른 시정 결과 사진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여러 개의 복장과 차량 디자인을 보고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출동차량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법인 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차량 사진	전면		후면	
	좌측면		우측면	

「경비업법」 제1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차량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여러 대의 차량을 신고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대표자)	법인 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주소			
	취업(예정)직위			

「경비업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우리 업체의 취업(예정)자인 (임원·경비원·경비지도사)에 대한 범죄경력조치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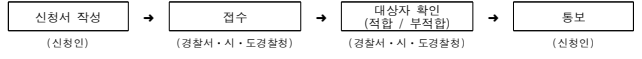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경비업 허가증 사본	수수로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각 1부	없음

작성요령

- 영문 성명 및 국적은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만 기재합니다.
-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조회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경비원명부					채용일	
						퇴직일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진 (3.5cm×4.5cm)		
주소				전화번호			
배치지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교부번호			
신체조건 (특수경비원에 한함)		신체상태		시력			
				좌			우
상 별	연월일	종류	시행·처분기관	연월일	종류	시행·처분기관	

교육훈련		경력		
기간	내용	기간	근무장소	직위(직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신체조건은 제7조에 따른 신체상태(팔과 다리가 완전할 것)와 시력(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경비원 [] 배치 [] 배치폐지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법인 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배치장소(구체적으로 기재)		전화번호		
경비원 배치(폐지) 내용	배치일시		배치폐지(예정)일시		
경비의 목적 또는 내용(구체적으로 기재)					
경비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배치 경비업무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교부번호

「경비업법」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비원의 (배치·배치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병력(病歷)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특수경비원의 배치신고만 해당함)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1.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번호는 신임교육을 받은 경비원만 기재합니다.

2. 배치·배치폐지 경비원 명단 작성 시 필요하면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8시간
경비업체	법인 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경비지도사	성명	자격번호	전화번호	
집단민원현장 관리책임자	성명	직책	전화번호	
경비원 배치 내용	배치 예정일시		배치허가의 요청 기간	
	집단민원현장의 유형 및 배치 예정 경비원 수			
	경비의 목적 또는 내용(구체적으로 기재)			
	배치지 주소 및 경비원의 업무 활동의 범위(구체적으로 기재)			
	사용 예정 장비			
	경비계획			
경비업무 도급인	성명	전화번호		
경비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교부번호

「경비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배치 경비원의 신임교육 이수증 또는 배치 경비원이 신임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경비계획 기재 또는 배치 경비원 명단 작성 시 필요하면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집단민원현장 관리책임자는 선임한 경우만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폐지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경비업체	법인 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경비지도사	성명	자격번호	전화번호	
배치장소	주소			
경비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배치폐지일시

「경비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배치폐지 경비원 명단 작성 시 필요하면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별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이라 함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제7조(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별 제10조제2항제5호----- ----- ----- ----- -----.
제13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① 영 제1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4시간을 말한다.	제13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①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은 매월 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② ----- ----- ----- ----- 직업윤리 -----.
제16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① 영 제19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6시간을 말한다.	제16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은 매월 3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특수	③ -----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	-----
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	-----
요한 이론·실무과목, 그 밖에	----- 직업윤리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